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 2023

☆ 새해부터 ☆ 달라지는 제도 및 시책

01. 도민생활·세제 분야
02. 투자·창업·일자리·노동
03. 사회복지·보건
04. 여성·가족·보육·교육
05. 주거·교통·안전
06. 농림·수산·축산
07. 문화·관광·환경

목 차

01 도민생활 · 세제 분야(8)

01. 도민 궁금증 한번에 해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2
02.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3
03.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4
04.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지원 대상 확대	5
05.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 시 의견청취 시행	6
06.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 시행	7
07.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개통	8
08.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9

02 투자 · 창업 · 일자리 · 노동(10)

01.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13
02.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14
03.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15
04.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16
05.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17
06. 경남 동부권 창업아카데미 조성	18
07. 창업기업 투자유치 수도권 거점 지원	19
08.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	20
09.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키 상담소 운영	21
10.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확대	22

03 사회복지 · 보건(17)

01.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24
02.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25
03.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26
04.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	27
05.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28
06.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인상	29
07.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30
08.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31
09.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32
10. 최종증 발달장애인 낮서비스 전문인력 지원	33
11.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34
12.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 확대	35
13.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추진	36
14. 감염취약시설 「단디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37
15.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38
16.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39
17.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40

04 여성 · 가족 · 보육 · 교육(13)

01. 부모급여 지원	42
02.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	43
03. 여성능력개발센터 · 여성가족재단 통합 출범	44
04.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45
05.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	46

06.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47
07.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확대 지원	48
08. 만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49
09.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50
10.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51
11.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52
12. 경남도립대학(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장학금 지급	53
13. 도내 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54

05 주거·교통·안전(12)

01.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할인	56
02. 알뜰교통카드 사업 확대	57
03.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58
04.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59
05.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확대 시행	60
06.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시행	61
07.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확대	62
08.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설치	63
09.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도 신설	64
10.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65
11.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서비스 운영	66
12.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 운영	67

06 농림·수산·축산(16)

01.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69
02.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70
03.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71

0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72
05.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신규 지원	73
06.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74
07. 산란계농장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75
08.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76
09.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77
10.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시행	78
11.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79
12.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실시	80
13.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시행	81
14.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82
15. 수산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 조성	83
16.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시행	84

07 문화·관광·환경(12)

01.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86
02. 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87
0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88
04.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89
05. 경남관광기념품 온라인 입점 확대	90
06. 경남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지원 확대	91
07. 산림휴양시설 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92
08.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93
09.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94
10.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행	95
11.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제도 도입	96
12.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신설	97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도민생활·세제 분야

도민 궁금증 한번에 해결, 경상남도 민원콜센터

| 경상남도 | 행정혁신과(☎055-211-3685)

교통·복지·관광 등 도정 전반에 대한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상남도 민원콜센터가 새롭게 개소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비대면 행정수요 증대 및 행정의 복잡·다양화로 콜센터 전문상담사 직접 상담을 통한 민원 서비스 소통 시스템 마련 필요
- 정보취약계층 및 코로나 19 등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대면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민원서비스 체계 구축 필요

주요내용

- (운영시간) 평일 09:00~18:00(18시 이후, 공휴일 재난상황실 연결)
- (주요상담) 민원 상담, 도정 안내, 코로나 19 관련 등



경상남도 민원 콜센터 공식 운영 안내 포스터. 콜센터 직원이 국번없이 120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경남도민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라는 문구와 '국번없이 120'가 크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범주는 생활민원(교통, 관광 등), 사무(여권, 자격증 발급 등), 코로나 상담(접종예약, 이상반응 등), 사업(청년, 일자리, 귀농 등)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행일

2022년 5월 13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행정안전부 | 지역균형발전과(☎044-205-3541)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64)

세액공제 받고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내 고향을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추진배경

-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 인구감소로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완 및 국가균형발전 기여
 - 답례품 사업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 기금 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주민 복리증진 추진

주요내용

- (주체/대상) 개인(법인불가)/주소지 외* 전 지자체 * 창원시민은 경남도 창원시 제외
- (상 한 액) 1인당 연간 500만원 ※ 답례품 : 기부금의 30%이내
- (세액공제) 10만원이하 기부시 전액 공제 / 10만원 초과분 16.5% 추가 공제
- (처벌규정) 기부 강요·모금 방법 위반에 대하여 형사 처벌
- (처리절차)



※ 2023년 1월 1일(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기부시스템 오프라인으로는 농협 전 지점을 방문하여 기부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취득세 과세표준 체계 전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044-205-3834)
경상남도 | 세 정 과(☎055-211-3716)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유상·원시 취득 시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무상 취득(상속 제외) 시에는 시가인정액으로 전환됩니다.

추진배경

- 공평과세 실현과 실질가치 반영을 위하여 부동산 과세표준 체계 전환

주요내용

취득원인	종전 과세표준	개정 과세표준
무상취득	시가표준액	원칙 : 시가인정액* 예외 : 시가표준액 ※ 상속분 취득세는 종전에 따름
유상취득 원시취득	(원칙) 신고한 가액 (예외) 시가표준액	사실상의 취득가격

* 시가인정액 : 취득 물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공매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

- ❖ 무상취득의 경우 부동산 취득일을 기준으로 취득일 전 6개월 ~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물건의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유상취득과 원시취득의 경우 사실상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
- ❖ 차량 무상취득의 경우 시가표준액 적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조 ~ 제10조의6

사회복지시설 지방세 감면지원 대상 확대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044-205-3853)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6)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지방세 감면 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두터운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대상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감면율)	개 정 (감면율)
사회복지법인 및 일부 사회복지시설*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	취득세·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등록면허세·주민세 100%	감면 연장 ※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등은 무료·유료 여부 등에 따라 감면 재설계
사회복지시설(무료)	신 설	취득세·재산세 50% (조례 50%p 추가 가능)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사회복지시설(유료)	신 설	취득세·재산세 25% (조례 50%p 추가 가능) 등록면허세·주민세 100%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정시 의견청취 시행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044-205-3844)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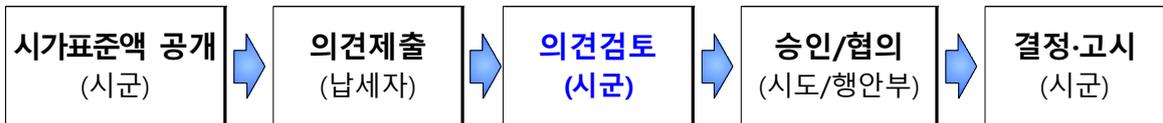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한 의견청취 절차가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시가표준액 결정 전 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 제출 의견에 상당한 이유 있을 시 변경결정 함으로써 시가표준액 결정의 절차적 합리성 제고

주요내용

- 시가표준액 산정 시 건축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산정한 시가표준액 변경 가능
- 기 산정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시가표준액을 변경 시 시·도지사의 승인 필요
- 건축물 외의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 필요 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변경 요청 가능
- 처리절차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법시행령」 제4조의2, 제4조의3 및 제4조의5)

지방세심의위원회 전화(영상전화) 의견진술 시행

|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33)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견진술이 필요한 경우 전화(영상전화)를 이용한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추진배경

-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의 불편함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 및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약자를 위한 납세자 편의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납세자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일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전화(영상전화)를 통한 의견진술 시행

현행 운영	⇒	2023. 1월1일부터 ~
○ 납세자 의견진술 신청 시 →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직접 참석		○ 납세자 의견진술 신청 시 →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 직접 참석 + 전화(영상전화포함) 의견진술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참고 | 「경상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의2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개통

행정안전부 | 세외수입보조금정보과(☎02-2100-4168)
경상남도 | 예산담당관(☎055-211-2425)

지방보조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보탬e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관리됩니다.

추진배경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지방보조금 관리의 투명성 확보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선집행, 후정산 보조사업자 계좌에서 보조금 관리 정산과정에서 증빙자료 검증	선증빙, 후지급 지방보조금전용계좌 (지자체 명의)에서 보조금 관리 지방보조금전용카드를 통한 증빙내역 실시간 검증 및 온라인 집행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개편

소방청
경상남도

교육훈련담당관(☎044-205-7288)
소방행정과(☎055-211-5325)

- ① 경력경쟁채용 각 분야별 시험과목 개편
- ② 필기시험 과목 중 한국사·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③ 시험단계별 점수 적용비율 변경(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
- ④ 가점 분야 확대 및 가산 방법 변경
- ⑤ 신체조건표(체격, 시력, 청력)의 합격기준 변경

개정이유

- 소방업무 전문화와 시대변화에 맞게 신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방법을 개편하여 분야별로 전문성이 높은 우수한 인재 선발

주요내용1 경력경쟁채용 각 분야별 시험과목 개편

종 전		개 정	
일반 분야	국어, 영어(생활), 소방학개론	일반분야 (소방장 이하)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소방 분야	국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구급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
		기타 분야 (소방사)	화학: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정보통신: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컴퓨터일반

※ 적용예시

- 화학(소방교·장):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소방학개론, 소방관계법규
- 화학(소방사): (한국사,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소방학개론, 화학개론
- 소방관련학과(소방사): 일반분야 시험과목(소방관계법규 2法 → 6法)
- 구급(소방사): 소방학개론, 응급처치학개론(한국사·영어는 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 (소방관계법규) 「소방공무원임용령」 별표5 참고
(응급처치학개론)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예규」 별표1의2 참고
(화학개론, 컴퓨터일반) 국가·지방직 9급 공무원 채용시험 수준으로 출제

주요내용2

한국사, 영어 과목의 능력검정시험 대체

개정사항			
<p>□ 인정기준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하고, 성적이 유효한 경우에만 인정</p> <p>1) (영 어) 보유 성적에 따라 소방청 또는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사전 등록된 경우 3년 인정</p>			
유효 영어 성적 보유 자	영어성적		사전 등록시 3년
	토픽 TOEIC	지텔프 G-TELP	
	토픽 TOSEL	플렉스 FLEX	토픽 TOEFL
	사전등록처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 (www.gosi.kr)		
	소방청(dlswo119@korea.kr) 전자우편 제출		
<p>2) (한국사) 채용시험 공고문에 제시된 기간 내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제출 [응시원서 접수 시 119고시(119gosi.kr)에 등록]</p> <p>□ 주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준등급 또는 기준점수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취득하지 못한 경우 필기시험에 불합격 처리(채점 미시행) - 영어성적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영어성적의 유효기간만 인정되므로 필히 사전등록 진행 <p>□ 적용예시 : 최종시험일(면접)이 '23. 8. 15.인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어) '20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3년) - (한국사) '19년 1월 1일 이후 실시된 시험 ~ 필기시험 전일까지 취득(역산하여 4년) 			

주요내용3

시험단계별 점수 적용비율 변경(체력·면접시험 비중 확대)

시험단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면접	100	100	-
필기+면접	75/25	75/25	-
체력+면접	15/85	25/75	면접 ↑
실기+면접	75/25	75/25	-
필기+체력+면접	75/15/10	50/25/25	체력·면접 ↑
체력+실기+면접	15/75/10	25/50/25	체력·면접 ↑
필기+체력+실기+면접	40/15/35/10	30/15/30/25	면접 ↑

주요내용4 가점 분야 확대 및 가산 방법 변경

종 전	개 정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1. 소방업무 관련 분야 자격증 또는 면허증을 취득한 사람 2. 사무관리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3.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4. 외국어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을 취득한 사람
필기시험점수에 부여	최종 환산점수에 부여

한국실용 글쓰기	보수교육을 받은 성적은 인정하되,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의 성적에 대해서만 인정
외국어능력 검정시험 (영어)	1. 사전등록과 관계없이 시험시행기관에서 정하는 유효기간만 인정 2. 과목 대체와는 별개로 가점비율에 해당하는 기준점수 또는 등급 이상 충족하는 경우 가점으로 추가 인정 3. 영어능력검정시험은 정기(정규) 시험성적만 인정

주요내용4 신체조건표(체격, 시력, 청력)의 합격기준 변경

종 전	개 정
체 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체 격 시험실시권자가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의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직무에 적합한 신체를 가져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시 력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청 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	청 력 두 귀의 청력(교정청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적어도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소방공무원임용령,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소방청 공고 제2022-164호 「소방공무원 채용(선발)시험 주요 개정사항 공고」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투자 · 창업 · 일자리 · 노동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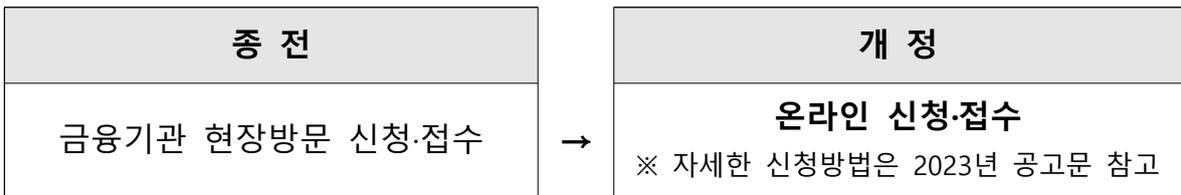
| 경상남도 | 경제기업과(☎055-211-3373)

온라인 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비대면 신청 및 실시간 처리현황 조회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육성자금 사용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추진배경

- 현장접수 등 비전자식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비효율 및 부작용 해소

주요내용



사용자 프로그램

자금선택

본인인증

약관동의

신청서 작성

신청완료

신청조회

홈페이지 메뉴 구성

전체메뉴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고객지원	은행전용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서식 다운로드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서식 다운로드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서식 다운로드	신청방법안내 공지사항 자유상	로그인 신청업체현황 승인업체현황 관급업체현황 이차보전현황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수요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을 도와드립니다.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시설설비자금

중소기업에 법인자금을 통한 지원방식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됩니다.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특별자금

도내 사업장을 한 중소기업에게 소정되는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드리는 자금입니다.

지원안내
신청하기
조회하기

시행일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일부터

| 참고 | 2023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문(도 홈페이지)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

경상남도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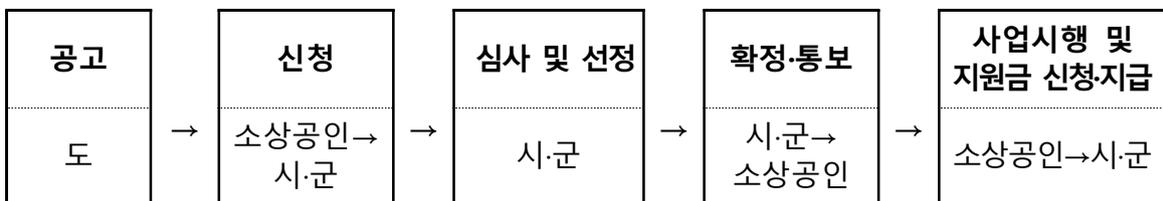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른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최근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라 온라인 소비가 늘어나고 빅데이터 등 스마트기술이 경영과 접목되고 있으나 소상공인의 대응은 부족
-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 매출 증대 및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로 인한 영업이익 한계 극복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 필요

주요내용

- 시행시행 : 도내 18개시군
- 사업규모 : 225개소
- 사업내용 : 소상공인의 사업량 내 사업용 디지털기기 구입비 지원 (공급가액의 70% 이내, 최대 200만원 한도)
 - 웨이팅보드, 키오스크, AI서빙로봇, 스마트오더, 스마트미러 등
- 추진절차



시행일

2023년 1월

대학 특화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63)

신규 인재와 기술 공급의 산실인 도내 대학을 청년 창업 생태계의 핵심 거점으로 집중 육성 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대학 보유 공간·장비·연구성과 등을 활용한 대학별 특화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하고 체계적인 실전형 청년 창업지원
- 대학별 창업 특화 분야의 우수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지원으로 체계적인 청년 창업가 육성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청년(예비) 창업자
- 사업내용 : 대학별 특화 창업분야 육성 지원 및 엑셀러레이팅
 - 사업화, 투자유치, 대학 내 공간 연계 창업공간 지원
 -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를 통한 엑셀러레이팅, 데모데이 개최
- 추진일정
 - 사업 공모(3개 대학) → 엑셀러레이터 선정(대학별 매칭)
 - 도내 청년(예비) 창업자 모집 → 사업 시행

시행일

2023년 2월

|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

경남형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62)

도내 신성장산업 분야 등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우수 액셀러레이터를 매칭하여 완결형 기술창업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국내 우수 액셀러레이터와 협업으로 경남 미래 전략산업(항공우주, 원전, 방산, 조선해양), 유망산업, 지역산업 분야 창업기업을 발굴·육성 및 투자하여 창업성공률을 높이고 혁신적인 성장을 지원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변 경
지원분야	일반 기술창업	전략산업 유망산업 지역산업
지원기업 수	10개사	30개사
액셀러레이터 수	1개	3개
지원전략	단순 액셀러레이팅	특화 액셀러레이팅 + 오픈이노베이션

▶ 사업대상 : 상기 3개 분야 기술기반 예비 창업자 및 7년 미만 창업기업

▶ 사업내용 : 창업기업 액셀러레이팅, 오픈이노베이션 등

※ 액셀러레이팅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가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 창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적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성장을 빠르게 돕는 활동

시행일

2023년 2월

| 참고 | 「경상남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제6조

창업청년 일자리플러스 지원사업

|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75)

도내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교육, 멘토링, 인건비 등의 창업 성장 지원을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 성장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지역 일자리 창출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경남지역 소재 기술창업 업종 및 사업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 지원규모 : 청년 창업가 20명
- 지원내용
 - (1년차) 청년 창업기업에 시제품 제작비, 컨설팅, 홍보비 등 창업 성장지원(연 15백만원)
 - (2년차) 청년 추가채용 시 인건비 지원 1년(월 200만원, 기업부담 10%)
- 추진일정
 - 사업공고('22. 12월) → 신청 및 접수('22. 12월 ~ '23. 1월)
 - 선정평가 및 협약체결('23. 1월) → 사업 추진('23. 1월~)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경상남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의2

경남 동부권 창업아카데미 조성

|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74)

경남 동부권역 창업을 활성화 하고 지역 창업자의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추진배경

- 경남 동부권 청년 창업자가 수도권 또는 인근지역(부산, 울산)으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창업환경 조성
- 창업 인프라 및 지원 환경이 열악한 동부권에 경남의 동부권역 창업거점을 마련하여 우수 창업프로그램 지원·운영으로 창업 활성화 기반 마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창업기업
- 사업위치 : 양산 미래디자인융합센터
- 사업내용
 - 경남 동부권(양산·김해·밀양 등) 소재부품 대중견기업 오픈 이노베이션
 - 입주 공간· 창업교육 및 멘토링· 특화분야 사업화 지원
 - 제조 창업기업 제품 대상 미래디자인 융합
- 추진일정
 - 참여기관별 공간활용 및 창업프로그램 운영계획 확정('22. 12월) → 운영계획(안) 마련('23. 1월) → 실시설계용역('23. 2~3월) → 리모델링 공사('23. 4~6월) → 청년 창업아카데미 개소('23. 7월)

시행일

2023년 7월

|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8조

창업기업 투자유치 수도권 거점 지원

| 경상남도 | 창업지원단(☎055-211-2572)

도내 기업 대상 수도권 투자사가 밀집한 지역에 거점 공간을 구축하여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지역 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도권 투자자의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IR·네트워킹을 위한 거점 공간 마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도내 창업기업 및 중소·벤처기업, 투자기관 등
- 지원내용
 - 서울 강남 TIPS타운 내 투자거점 공간 구축
 - 지역 기업의 수도권 창업투자사, 액셀러레이터 대상 투자 상담 및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개최
- 추진일정
 - 공간 리모델링 및 개소('23. 1~2월) → 투자 상담 및 투자유치 기업설명회 개최('23. 2월~)

시행일

2023년 2월

| 참고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를 위한 노동권익지원단 운영

| 경상남도 | 노사상생과(☎055-211-35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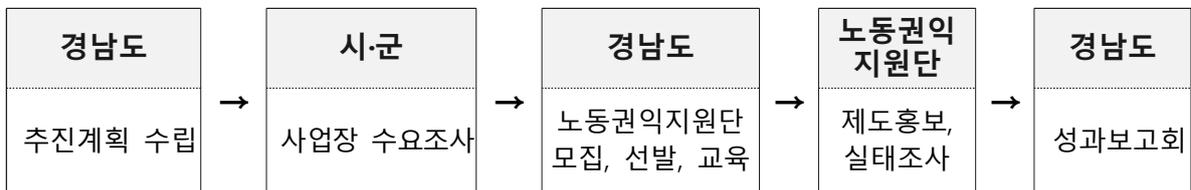
노동권익지원단 운영을 통해 도내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에 노동관계법을 홍보하여 노동자와 사업주가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노동환경을 조성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방향 모색
- 사업주에 대한 노동관계법 홍보로 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 예방
- 노동 관련 컨설팅 연계로 사업장 애로 해소 및 노사상생 환경 조성

주요내용

- (사업대상) 도내 상시 노동자가 5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노동자 및 사업주
- (사업량) 노동권익지원단 18명
- (주요내용) 사업장 노동환경 실태조사, 노동관계법 홍보 및 컨설팅 연계
- (추진절차)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경상남도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여성 노동자 권리 지킴 상담소 운영

| 경상남도 | 노사상생과(☎055-211-3594)

여성노동자의 근로 과정에서 오는 다양한 고충 파악과 해결 방안 지원을 위한 상담소를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여성+노동자라는 지위에서 오는 취약성으로부터 여성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구축 필요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 2027년
- 총사업비 : 비예산 * 기존사업(여성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지원)에 증액 편성
- 사업내용 : 도내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 상담(연100건)
 - 성차별, 부당대우(폭언, 폭행, 성희롱 등), 임신 출산, 경력단절 등 노동권의 상담
 -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개인 심리상담 등
- 시행기관 :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시행일

2023년 2월

| 참고 | 경상남도 일·생활균형 지원 조례

외국인 투자기업 감면 확대

| 경상남도 | 세정과(☎055-211-371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감면율이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제고

주요내용

- 감면율 85% → 100% 확대 및 감면기한 3년 연장

구 분	종 전	개 정
감면세목	취득세	좌동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에 직접 사용 부동산	좌동
감면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15년간	좌동
감면율	85%	100%
감면기한	2022.12.31.	2025.12.31.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 경상남도 도세감면조례 제6조, 제15조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사회복지 · 보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8)
경상남도 | 복지정책과(☎055-211-4835)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 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합니다.

추진배경

- 생계곤란 저소득 가구에 대해 최저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4인가구 기준 1,536,300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없음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중위소득 65%	→ 4인 가구 기준 1,620,200원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신설 생활준비금 공제율 기준중위소득 100%

※ 지원금 인상내역

-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4인가구 기준 5.47% 인상)
 - (현행) 1인가구 583,400원, 4인가구 1,536,300원
 - (변경) 1인가구 623,300원, 4인가구 1,620,200원
- 재산산정 시 완화기준 지속 운영(22년 하반기부터 계속)
 -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백만원, 중소도시 42백만원, 농어촌 35백만원), 생활준비금 공제율(기준중위소득 100%)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긴급지원 지원 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23.1.1.)

경남형 위기가구 찾기

| 경상남도 | 복지복지과(☎055-211-4814)

경남도는 복지사각지대 정기운영에 따른 시군의 조사전문인력을 지원하여 도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신속한 발굴과 지원에 앞장 섭니다.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의 위기정보를 제공받아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시 전담 조사인력을 지원하여 도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상반기 ~ 12월
- 사업대상 : 시군별 전담 조사인력 지원
- 사업내용 : 복지사각지대 정기운영(연 6차)시 기획조사 발굴
- 사업량 : 전담조사인력 21명
- 조치계획 : 위기가구 발굴시 긴급복지 등 공공·민간 연계 복지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3년 상반기

|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홀로어르신 일산화탄소 경보기 보급

| 경상남도 | 노인복지과(☎055-211-4863)

홀로어르신 가구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보급·설치합니다.

- 지원대상 : 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추진배경

- 안전사고 대응에 취약한 홀로어르신 가구에 경보기를 설치하여 사전적 위험의 예방 및 일산화탄소 중독 피해를 최소화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상반기 ~ 12월
- 사업대상 : 만65세 이상 실제 혼자 살고 있는 어르신
- 사업내용 : 일산화탄소 감지용 경보기 1대 설치
- 사업량 : 10,000대
- 신청·접수 :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시행일

2023년 상반기

| 참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노인일자리를 활용한 수직정원 보급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사무처 (☎044-215-708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5)
경상남도	노인복지과(☎055-211-4893)

복권기금으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일자리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노인일자리 사업의 시장경쟁력 강화 및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개발 필요
- 복권기금으로 조성된 시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노인일자리 영역 확대

주요내용

- (사업대상) 6개 시군
- (사업내용) 팜 시설 조성을 통한 노인적합 일자리를 창출하여 미세먼지 저감식물 생육·재배하고 취약시설 수직정원 보급
- (지원내용) 팜 조성비 및 운영비 지원(개소당 183백만원 지원)
- (일자리창출 효과) 310명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 「노인복지법」 제23조

장기요양기관 CCTV 지원

보건복지부 |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7)
경상남도 | 노인복지과(☎055-211-4884)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CCTV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비 지원으로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어르신의 안전하고 편리한 노후생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 ('23.6.22) 시행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지원금액 : 노인요양시설 495만원/개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75만원/개소
- 사업량 : 218개소 * 기 설치된 시설 제외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2(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장애수당 · 장애인연금 인상

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20)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34)

장애수당 재가 4→6만원, 시설 2→3만원(50% 인상)을 지원하고
장애인연금 월30.8만원 → 32.2만원(4.7% 인상)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물가상승 등을 고려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인상을 통해 소득지원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장애수당(재가) 월 4만원	장애수당(재가) 월 6만원
장애수당(시설) 월 2만원	장애수당(시설) 월 3만원
장애인연금 월 30.8만원	장애인연금 월 32.2만원

○ 지원대상

-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기초·차상위 수급자 중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 「장애인연금법」 제3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장애인 리조트 이용료 할인

|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22)

장애인의 여가·문화생활 보장을 위한 “장애인 세상보기 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2023년부터 도내 등록장애인 및 동반가족은 할인된 가격으로 리조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을 위한 여가생활 서비스 지원 욕구 증대
- 도내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 여행권 및 이동권 확대」 지속적 요구
- 도내 유명 리조트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도와 업무협약 체결

주요내용

- 도내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약189천명) 및 동반가족이 아래 리조트 이용시 개별 회원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할인 제공

리조트별 할인율

- ▲ 통영마리나금호리조트 : 주중(67%), 주말((33%)
- ▲ 소노캠거제리조트 : 주중(75%), 주말(58%), 부대시설(30~40%)
- ▲ 거제 벨버디어 한화리조트 : 주중(70%), 주말(57%)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도 자체 사업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사업 확대

|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33)

경제활동 기회가 없는 최종증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 기회 제공을 통해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를 추진합니다.

추진배경

- 경제적 취약계층인 최종증장애인 대상 권리중심 맞춤형(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일자리사업 제공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와 경제적 자립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2년) 10명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23년) 100명

- 수행직무

직무명	주요내용
권익옹호활동	○ 장애인권리협약홍보,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권리 이행 실현 활동 (예) 장애인단체 각종 집회 참석 또는 피켓 활동 등
문화예술활동	○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예) 근육장애인이 직접 자신의 생각, 소망 등을 표현하는 행위예술 (예) 발달장애인의 경우 문화예술활동 수준은 낮고 체험활동 참석 위주 (예) 시각장애인의 경우 피아노, 아코디언 연주 및 예술협회와 연계 협업
인식개선활동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상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강의,공연활동 (예) 발달장애인이 공공기관을 방문하여 악기연주 등 특기 시연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장애인복지법」 제19조(사회적응 훈련) 및 제21조(직업)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운영

보건복지부 | 장애인서비스과 (☎044-202-3349)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단기보호 지원필요

주요내용

- (사업대상) 경상남도
- (지원대상)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의 병원 입원, 경조사 등의 사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자
- (지원내용) 긴급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단기 보호 체계 지원

시행일

2023년 4월 1일

참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서비스 전문인력지원 시범사업

|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43)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집중적이고 개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배치하여, 도전적 행동을 완화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도전적 행동, 폭력 성향 등으로 주간활동서비스 등을 거부당하거나 부적응으로 가족의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 집중지원 서비스 지원강화로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참여 촉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 2개 시군(사천, 양산)
- (지원대상)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 (지원내용)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전문인력 및 보조인력 인건비 지원

시행일

2023년 1월(예정)

| 참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044-202-3308)
경상남도 |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도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를 조사합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사회 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

주요내용

- 장애인 등 편의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대상 시설에 따라 '98. 4. 11. 이후 건축적 행위가 있었던 시설과 정비대상시설을 방문하여 실측 조사 ※전수조사 주기 5년, 2018년 기시행
- 편의시설 미설치 및 미흡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시정명령 등 개선 조치

- 전수조사 대상시설 : (잠정) 도내 16,382개소
 - 공원 :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불특정 다수인인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부대시설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10세대 이상), 다세대 주택(10세대 이상) 및 부대·복리 시설, 기숙사
 - 통신시설 : 공중전화, 우체통

시행일

2023년 3월~11월 (10개월간)

참고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1조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대상 확대

|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055-211-4924)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 치료를 받지 못하는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까지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의 치과 비급여 진료비의 경제적 부담 해소
- 구강건강관리 취약계층의 치과 적기 치료 유도 및 의료보장 공공성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 만 60세 이상

<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 >

- (대 상) 도내 거주 만 60 ~ 64세 저소득 어르신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건강보험료 하위 50% 정도 해당자
- (사 업 량) 매년 1,500명 정도
- (지원내용) 건강보험 비급여 임플란트 시술비용 차등 지원
 - 의료급여·차상위 등 : 1개당 100만원 이내
 - 건강보험 하위 50% 정도 : 1개당 70만원 이내
- (소요예산) 매년 2,400백만원(도비 720, 시군비 1,680) ※ 도 30 : 시군 70

시행일

2023년 상반기(예정)

| 참고 | 경상남도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마음안심버스 운영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5)
경상남도 | 보건행정과(☎055-211-4933)

도민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기동력 있는 버스를 활용하여 직접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 ('22년) 마음안심버스 1대 운영 → ('23년) 2대 운영(1대 추가)

추진배경

- 코로나 우울 및 재난 트라우마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 제고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및 인식개선 등 도민의 정신건강증진 도모

주요내용

- 서비스 대상 :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가 필요한 누구나
- 서비스 내용
 - 정신건강 점진(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상담
 -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 위기대응 및 현장 상담소 운영
 - 홍보 및 캠페인을 통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인식개선
 - 지역사회 자원 연계·의뢰를 통한 조기발견 및 치료연계 등
- 사업운영
 - (사업총괄)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1개소)
 - (사업참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20개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5개소)
- 확대내용 : ('22년) 경상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경남 전체)
→ ('23년) 광역센터(중·동부경남) 사천시(서부경남)

시행일

2023년 3월 2일(확대 시행)

감염취약시설 「 단다 찾아가는 안심 컨설팅 」

질병관리청 | 중앙방역대책본부(☎043-719-9346)
경상남도 | 감염병관리과(☎055-211-7644)

도내 감염취약시설 976개소 대상으로 코로나19 감염관리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사후 신속 대응을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중증 위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 지속 발생
- 고령환자 및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치명율이 높아 사망자 다수 발생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전담대응팀 구성·연락체계 구축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실시	전담대응팀 상시 연락체계 유지 현장컨설팅 사후 관리 강화 (현장컨설팅 후 조치사항 지속 점검)

- 집단감염 발생 전, 사전 조치
 - 전담대응팀 구성·상시 연락체계 구축·유지 : 46개팀 241명
 - 일일발생 현황 모니터링 및 분석
 - 시설 감염관리자 지정 및 종사자 감염관리 교육 실시
- 집단감염 발생 후, 사후 조치
 - 집단발생시설 감염관리 현장 컨설팅 : 연중(수시)
 - 컨설팅 후 개선 조치 사항 등 지속 지도·관리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감염취약계층의 보호 조치)

돌봄시설 종사자 잠복결핵감염 검진

질병관리청 | 결핵정책과(☎043-719-7344)
경상남도 | 감염병관리과(☎055-211-7635)

고용계약기간 1년 미만인 돌봄시설 종사자들에 결핵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 전파를 선제적 차단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의 돌봄시설 임시 일용직 종사자
잠복결핵검진 조기발견으로 결핵전파 선제적 차단

주요내용

- 사업대상 :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돌봄시설 임시일용직 종사자
* 임시일용직근로자로 고용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일정한
사업장 없이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한 대가를 받고 일하는 자
- 사업수행 : 시군 보건소
- 주요내용 : 잠복결핵감염 검사비 지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참고 | 「결핵예방법」 제11조제2항, 제28조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 표시광고정책과(☎043-719-2189)
 경상남도 | 식품의약과(☎055-211-5035)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식품 등에 표시되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 안전은 지키면서 폐기물을 감소시키고 환경을 보호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p>유통기한</p> <p>-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및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p>	<p>소비기한</p> <p>-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p>

반가워요, 소비기한!
우리도 안심, 환경도 안심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소비자 중심의 표시제로 변경됩니다.

과학적인 검증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소비기한으로 시작되는 반가운 변화

-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유통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유통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국제 기준으로 경쟁력 강화**
한국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국가 간 통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되면 주의할 점

-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유통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식품 폐기물 감소를 통한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유통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유통 가능하므로 소비자에게 안전에 이상이 있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이후에도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 국제 기준으로 경쟁력 강화**
한국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을 반영한 국가 간 통일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수출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

보건복지부 | 응급의료과(☎044-202-2551)
경상남도 | 식품의약과(☎055-211-5054)

도내 응급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체계적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를 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응급의료 인력·조직·예산 등 기반 미비, 응급의료 역량 강화 필요
- 응급의료 관계기관(119 소방, 응급의료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조정 기구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선
- 도내 응급의료 역량 및 기반 미비로 응급환자 응급실 찾아 헤매는 사례 발생	-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운영으로 도민 중심의 효율적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환자 신속이송, 적기치료로 골든타임 확보

- (설치장소) 도청(본관 지하 1층)
- (구성조직) 3팀8명[도 행정인력, 소방관, 응급의료지원단(민간 응급의료전문기관)]
- (주요역할) 응급의료 관계기관 연계·조정, 불수용사례 관리, 정보체계 구축, 정책개발, 자문, 현황 분석·조사, 교육·훈련, 홍보, 질 관리 등

시행일

2023년 상반기

참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의6(시·도응급의료위원회)
- 「경상남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4. 여성 · 가족 · 보육 · 교육

부모급여 지원

보건복지부 | 보육사업기획과(☎044-202-3561)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75)

지원 금액 확대 등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부모급여를 도입하였으며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만 0~1세에게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영유아에 대한 양육 지원으로 부모의 경제적 부담 해소

주요내용

- 지원대상 : '22년 출생아부터 만0~1세(24개월 미만)
- 지원금액 : 만0세 70만원, 만1세 35만원(개월 기준으로 지급)
- 지급방식 ※ 구체적인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은 시스템 및 지침 개정 중
 - (만0세) 어린이집 미이용시 70만원 부모 통장 입금,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514천원*) 선 지급후, 차액분(186천원) 부모 통장 입금
 - (만1세) 기존 지급방법과 동일(계좌이체)

(단위 : 만원)

2022년 영아수당				2023년 부모급여				2024년 부모급여			
연령	시설	만0세		연령	시설	만0세		연령	시설	만0세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미이용	이용
보육	시설	월 30*		보육	시설	월 35		보육	시설	월 100	월 50
	미이용	(현금)			미이용	(현금)			미이용		
	시설	월 50			시설	월 50			시설	월 100	월 50
	이용	(바우처)			이용	(바우처)			이용		

* '22.1.10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아이돌봄(시간제) 정부지원시간 확대

여성가족부 | 가족문화과(☎02-2100-6364)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55)

아이돌봄 지원사업 시간제서비스 정부지원 한도시간(시간제 기준)이
연 960시간으로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하여 양육
부담 경감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정부지원시간(시간제 기준) 연 840시간	→ 정부지원시간(시간제 기준) 연 960시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생후 3개월이상 ~ 만12세이하 아동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아이돌봄 서비스 종류)
 - 영아종일제 서비스, 시간제서비스(기본형·종합형),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 기관연계서비스
- (정부지원시간) '22년 시간제 기준 840시간 → '23년 시간제 기준 960시간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여성능력개발센터 · 여성가족재단 통합 출범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14)

여성능력개발센터·여성가족재단 통합 개편으로 기능 중복과 비효율을 제거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여성가족분야 통합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여성능력개발센터 수행 교육의 타 기관(평생교육원, 주민자치센터 등) 유사 중복 문제 해결과 설립 3년 차인 여성가족재단의 실효성 있는 정책기능 강화를 위하여 행정기능 통합 필요

주요내용

- 여성능력개발센터 기능 흡수와 정책대상 확장으로 재단 역할 확대
 - 센터 기능(일부 교육 및 자원봉사회를 통한 사회나눔) 이관
 - 여성과 남성, 가족, 아동·청소년, 다문화, 돌봄까지 사업분야 확장
 - 현안사업 실행능력을 높이는 조직 구성으로 능률성 제고
- 센터 공간 재구성으로 통합 지원 시너지효과 창출
 - 도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 상생형 소통공간 마련
 - 여성가족 관련 지원기관 입주를 통해 종합서비스 제공

시행일

2023년 1월 2일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 확대

|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33)

여성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안정적인 고용을 위하여
새일여성인턴 취업장려금 지급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 연계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제고
-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 여성에 대한 취업경험 및 경력이음 지원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기업 및 인턴) 각30만원씩 지급	(기업 및 인턴) 각50만원씩 지급

※ 경력단절여성 등 미취업여성이 3개월의 인턴기간 종료 후 상용직·정규직으로 채용되어 3개월 고용 유지 시 기업과 인턴에게 취업장려금 각50만원씩 지급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경상남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7조

청년여성 일경험 및 채용 지원

| 경상남도 | 여성정책과(☎055-211-5233)

도내 우수한 기업체와 역량 있는 여성들의 채용을 지원하여 질 좋은 일자리 연계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경남 청년여성 대상 직무능력 향상 지원 및 지역특화산업, 사회적기업, 여성단체 등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활성화 지원

주요내용

- 참여대상
 - (청년) 만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여성
 - (기업) 지역특화산업, 사회적기업, 여성단체 등
- 사업량
 - 청년여성 일경험 : 17명(전일 7, 파트 10)
 - 지역특화산업 : 3명(전일)
- 사업내용 : 청년여성의 직무교육과 연계한 일경험과 취업 지원을 통하여 지역 산업 및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연계
 - 기업 인건비(연 850~1800만원) 및 청년 교통비(월10만원) 지원
- 추진방식 : 기업체 모집 확정('23.1월한) 후 청년 채용('23.2월한)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산후조리비(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3)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로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지원
- 지원기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2023년) 기준에 따라 유형별 차등 지원
 - 출생아당 최대 15일까지, 1회 지원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확대 지원

|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63)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감면료 지원을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취약계층 산모의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에 따른 감면료 혜택을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문화가족 산모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희귀난치성질환 앓고 있는 산모
 - 한부모가족의 산모 ○ 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지원내용 : 공공산후조리원 2주간 이용 감면료 35% → 70% 확대 지원
※ 2주간 이용료 104만원 → 48만원으로 이용 가능

시행일

2023년 1월 1일

만5세아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 경상남도 | 가족지원과(☎055-211-5275)

경남의 완전한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2023년 만5세아반에 한해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사립유치원 만5세아 무상교육 정책에 따른 유치원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도내 유아에 대한 동등한 지원을 위해 추진함

주요내용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만5세아반(2017년 출생아)
- 지원금액 : 최대 154천원(수납한도액 내에서 실제 부담한 금액만큼 지원)
- 지급방식 : 어린이집 필요경비 항목에 대한 부모의 동의서, 운영계획서, 실제 운영 사진 및 결과보고서 등을 토대로 어린이집 신청을 통해 지원 또는 부모 직접 지원 등 방식 검토 중

*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지침 마련 중

* 지원항목 및 '23년도 지원단가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분	필요경비(연간)					
	입학 준비금	행사비	현장 학습비	시도 특성화비	차량비	특별 활동비
국공립				월 30		
민간, 가정	연 95	연 100	분기당 40	월 37	월 30	월 60
기타(법인,협동 등)				월 30		월 65

※ 아침·저녁 급식비 제외

시행일

2023년 3월 1일

| 참고 | 「영유아보육법」, 「경상남도 보육 조례」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 지원

보건복지부 | 아동권리과(☎044-202-3444)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73)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지지체계 구축 등 지원을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가정에서 보호받는 아동보다 일찍 보호를 벗어나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공평한 삶의 출발 기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주요내용

구분	종 전	개 정
① 자립수당	보호종료 5년 이내 월30만원 지급	보호종료 5년 이내 월40만원 지급
② 자립정착금	8백만원 지급	10백만원 지급 자립교육 이수와 연계 지급
③ 의료비 지원	-	→ 보호종료 후 5년 간 의료급여 2종 수준* 으로 본인부담금 경감('23.하)
④ 사회적 지지 체계 강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8명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12명 맞춤형사례관리 확대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금 : 1차 병원 외래 1000원, 23차 병원 외래 급여비 총액의 15%, 입원급여비 총액의 10%, 약국이용 500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학대피해아동 보호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 아동학대대응과(☎044-202-3387)
 경상남도 | 아동청소년과(☎055-211-42744276)

아동학대 대응 공적보호 추진으로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및 학대가정의 재발방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추진배경

- 아동학대 대응체계 공공화 추진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의 적극적인 보호를 위한 시설 확충 및 학대가정의 재발방지 지원으로 아동학대 대응 강화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① 학대피해가정 사례관리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 운영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40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보호전문기관 8개소 운영 *거제·통영 신규 개설 •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지원(102가구)
②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쉼터 6개소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피해아동쉼터 8개소 운영 *진주양산 각 1개소 추가 개설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아동복지법」 제45조 등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대상 확대

여성가족부
경상남도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아동청소년과(☎055-211-4295)

사회·경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위기청소년이 지원 대상 선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대상자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추진배경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치료비·학업지원비 등 지원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중위소득 72% 이하 지원 (생활·건강지원 65% 이하 지원)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만 9세 이상~만 24세 이하 저소득층 위기청소년
-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하
 -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 학업지원: 수업료, 학교운영비(월 15만원 이하), 검정고시, 학원비(월 30만원 이하)
 -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하
 -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하
 - 활동지원: 월 30만원 이하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 제15조

경남도립대학(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장학금 지급

| 경상남도 | 교육담당관(☎055-211-2483)

경남도립대학(거창대학·남해대학) 전액장학금 지급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유치하고 도립대학의 공적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 가속화로 지방대학 위기 직면
- 등록금 부담완화 등 안정적인 학업 여건 조성으로 지역 우수 인재 유치 및 도립대학의 공적 역할 강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내역 : 경남도립대학생 / 전액장학금
-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 국가장학금 등 교외장학금을 초과하는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지원
- 사 업 비 : 1,550백만원(거창 841백만원, 남해 709백만원)

시행일

2023년 3월

| 참고 | 관련 법령

도내대학 재학생 장학금 지급 확대

| 경상남도 | 교육담당관(☎055-211-2485)

도내대학 재학생 2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대학생 장학금을 확대 지원하여 지역인재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지방대학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도내대학 재학생 150명	도내대학 재학생 200명

《 장학생 선발 개요 》

- 지원규모 : 200명 / 1인당 1백만원(도내 22개 대학)
- 지원금액 : 200백만원 (도 출연금)
- 지원대상 : 도내 고교졸업 한 도내대학 재학생(2~4학년)
- 장학금성격 : 학자금(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등 생활비)
- 선발기준 : 성적, 생활정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

시행일

2023년 3월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5. 주거 · 교통 · 안전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 할인

| 경상남도 | 건설지원과(☎055-211-2994)

2023년 1월 1일부터 거가대교 휴일 이용차량(소·중형) 통행료가 20% 할인됩니다.

추진배경

-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도민의 민자도로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해 거가대교 휴일(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차량(소·중형)에 대한 통행료를 20% 할인 시범운영

주요내용

휴일 통행료(종전)	→	휴일 통행료(개정)
소형차량 10,000원 중형차량 15,000원		소형차량 8,000원 중형차량 12,000원

※ 평일은 변동없음

※ 차종 구분

- ① 소형 : 2축, 율폭 279.4mm 이하(예시: 승용차, 소형승합차, 소형화물차)
- ② 중형 : 2축, 율폭 279.4mm 초과, 율거 1,800mm 이하, 대형 감지차량 중 최대적재중량 5.5톤 이하 화물차량(예시 : 중형승합차, 중형화물차)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알뜰교통카드 사업 확대

국토교통부 | 광역교통경제과(☎044-201-508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경상남도 | 교통정책과(☎055-211-4135)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혜택이 경상남도 18개 전 시군에 거주하는 도민으로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도민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 제공과 친환경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 장려
- 더 많은 도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23년 도 내 18개 전 시군으로 사업확대

주요내용

- 알뜰교통카드 사업 확대 : (당초) 12개 시군 → (변경) 18개 전 시군
※ '23년 사업 신규참여 : 의령군, 남해군, 하동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 사업내용
 - (지원내용) 대중교통 이용 시 지출한 교통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적립하여 지급(20%, 공공재원)하고, 카드사가 추가 할인(약 10%) 제공
 - (마일리지 적립) 승·하차 전후 이동 한 거리에 비례하여 적립(월 최대 19,800원)



- (이용대상자) 도 내 시군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19세 이상 도민
- (카드발급 및 이용안내) 알뜰교통카드 누리집(<https://alcard.kr>)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044-201-3359)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14)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 대상자를 확대합니다.

* 주거급여 사업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 대상 임차료 및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지원 사업

추진배경

-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한 2023년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국토교통부고시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 변경

주요내용

-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 변경

총 전	→	개 정
중위소득 46% 이하 주거급여 지급		중위소득 47% 이하 주거급여 지급

※ 주거급여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년	중위 45%	790,737	1,346,391	1,741,760	2,137,128	2,532,497	2,927,866
'21년	중위 45%	822,524	1,389,636	1,792,778	2,194,331	2,590,818	2,982,871
'22년	중위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23년	중위 47%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0년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21년	1,827,831	3,088,079	3,983,950	4,876,290	5,757,373	6,628,603
'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주거급여법」 제5조, 「주거급여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

안전취약계층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 지원

| 경상남도 | 에너지산업과 ☎055-211-2293

화재 시 신속 대피가 곤란한 장애인,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3. 1월~12월
- (사업대상)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712개소*
 - * 장애인시설 138, 노인시설 518, 아동시설 54, 청소년시설 2
- (사업량) 소공간용 소화용구* 지원 1,433개
 - * 수전반, 배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
- (사업비) 3억원
- (시행주체) 전 시·군
- (사업내용) 건물 내 전기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 소공간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경상남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지역건축안전센터 의무 설치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 | 건축안전과(☎044-201-4986)
경상남도 | 건축주택과(☎055-211-4332)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가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건축물 관련 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광역지자체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외에도 건축허가 및 노후건축물 비율 등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선도적으로 설치할 필요성이 제기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무 1. 광역시도 2.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의무 1. 광역시도 2. 인구 50만 명 이상 시군구 3. 건축허가 면적(직전 5년 연평균) 또는 노후 건축물 비율이 전국 상위 30% 이상에 해당하는 인구 50만 명 미만 시군구

- * 경남도 현행 의무설치 대상 : 경남도, 창원시, 김해시
(설치현황) 경남도('22.1.12.), 창원시('22.1.13.), 김해시('22.1.12.), 거제시('21.1.11.-임의설치)
- * 경남도 '23년도 의무설치 :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참고 | 「건축법」 제87조의2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시행

경상남도 | 건설지원과(☎055-211-2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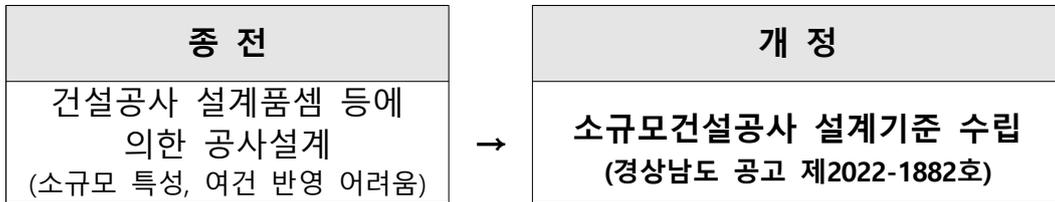
소규모건설공사*의 공사규모 및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공사비 산정으로
중소건설업체의 권익보호 및 품질과 안전이 확보된 건설환경을 조성
합니다.

* 상·하수도 정비, 마을안길 포장공사 등 생활과 밀착된 공사

추진배경

- 공사 규모 및 불리한 현장 여건에 적절한 설계기준을 수립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와 부실시공 예방에 기여

주요내용



기준 예시) 『경상남도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中

현행 기준

22년 표준품셈(1-1-3 적용방법)
'시공량/일'로 명시된 항목 중 총
시공량이 본 품의 기준 미만일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별도 계상

문제점

설계서 수량만큼 공사비로 계상하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계장비,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지급

본 기준

총 시공량이 본 품(시공량/일)의 기준
미만일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

총시공량(A), 기준시공량(표준품셈)(B),
산출근거상 1일 작업량(Q)

구분	조건	적용
i)	A ≤ B/2 일 경우	B/2
ii)	B/2 < A ≤ B 일 경우	Q=A

※ 단, 표준품셈에서 '시공량/일'으로 명시된 항목만 해당

예시 '아스팔트 표층포설 및 다짐' : 총시공량이 200㎡일 때

※ 현행 품셈은 일 시공량 300㎡ 기준으로 단가 산정

6,433원/㎡

▶

9,650원/㎡ [ii]적용

○ **기준의 적용**

- 도, 시군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건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소규모 관급
공사에 본 기준을 적용함

*추정가격 = 총공사(설계)금액 -
부가가치세 - 관급자재대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관련 법령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 직무분야 확대

| 경상남도 | 사회재난과(☎055-211-2883)

경제·민생범죄 등 복잡·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는 행정법규 위반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분야를 확대합니다.

추진배경

-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의 직무분야 확대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민생범죄 피해 사전예방 및 선제 대응을 위해 직무분야 확대 필요

주요내용

(종전) 11개 분야	(확대) 15개 분야
환경, 청소년보호, 대부업, 하천, 개발제한구역,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 의약, 부동산, 농약비료	종전 11개 분야 + 방문판매, 석유, 자동차관리, 관광

시행일

2023년 2월 1일

참고

「형사소송법」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설치

| 경상남도 | 방호구조과(☎055-211-5353)

소방력 미배치 45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확대 설치하여 기본적인 소방안전망을 구축합니다.

추진배경

- 도내 169개 면지역 중 83개 면지역 소방력 미배치로 화재 초기대응 곤란
- 화재 건수가 연 평균 6건 정도 발생하는 면지역에 소방기관 설치 애로
-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의용소방대를 소방차량 및 진압장비 등을 갖춘 전담의용소방대로 전환하여 재난현장에 신속대응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18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운영	4년간 45개 면지역 전담의용소방대 추가 설치 - '23년 11개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 26년까지 매년 11개대~12개대 설치

※ 소방기관 미설치 83개 면지역 중 최 인근 소방기관으로부터 5km(10분) 이상 거리에 있는 45개 면지역에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전담대 청사



소방차량



공기호흡기



방화복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2026년까지 지속 추진

참고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제4항
-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진압을 전담하는 의용소방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제도 신설

소방청 |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3)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6)

체계적인 화재안전관리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 공사현장은 착공 신고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개정이유

- 2020년 4월 이천 물류센터 화재사고 대책으로 입법('21. 11. 30. 제정) 추진되어 건설현장 화재안전관리 체계 마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신 규)
없음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까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 소방서장에게 14일 이내 신고

※ 선임대상: 연면적 15,000㎡ 이상, 연면적 5,000㎡ 지상 11층/지하 2개층 이상, 연면적 5,000㎡ 냉동·냉장 창고

※ 안전관리자 자격: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취득 + 강습교육 수료

시행일

2022년 12월 1일

참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동법 규칙 제17조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 개정

| 경상남도 | 방호구조과(☎055-211-5393)

- 경상남도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변경
- 경상남도 옥외행사 안전관리계획 신고와 통보 주체 변경
- 도지사는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하도록 신설

개정이유

- 서울 이태원 참사로 인한 주최·주관자가 없는 다중이 운집하는 옥외 행사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
- 옥외행사 등 안전관리는 컨트롤 타워가 되는 책임기관에서 관리 되어야 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소관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옥외행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고받은 소방서장이 도 관련 부서의 장 및 시장·군수 및 경찰 서장에게 통보	<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소관 도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옥외행사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 신고 받은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 소방서장 및 경찰서장에게 통보- (신설) 도지사는 주최자·주관자가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시행

시행일

2023년 1월 중(예정)

| 참고 | 경상남도 옥외행사에 관한 조례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서비스” 운영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14)

소방관계법령 부지·오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소방민원 정보를 간단·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시행이유

- 소방민원 정보에 대한 부지·오인으로 인한 불이익 처분*과 금전적 부담**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화 된 소방민원정보 제공 서비스 시행
-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미신고 등, ** 완비증명서 등 추가 발급 및 영업중단

주요내용

종 전 없음	→	신 규		
		건축물	방염	다중이용업
		민원처리절차, 위반 시 처벌사항, 관할 소방서 연락처		
		소방시설 종류 착공(완공), 감리지정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	방염성능검사 판정 방염대상 물품	다중이용업소 판정 안전시설등 종류 책임보험, 소방안전교육

알기 쉽고 찾기 쉬운 “소방민원119”
건축물 주소 → 용도 → 층수 → 연면적

귀 건축물은 아래 소방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

소방시설, 소방공사, 소방안전관리자신청, 자체점검결과보고, 발차점검

자세한 사항은 00소방서 예방안전과 055-000-00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피난기구

혹시 건축물안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가 있나요?

Copyright © 2022 by 경상남도소방본부. All Rights Reserved. 경상남도 소방본부

시행일

2023년 3월 1일 예정

참고 |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법」, 「다중이용업소법」

소규모 영업장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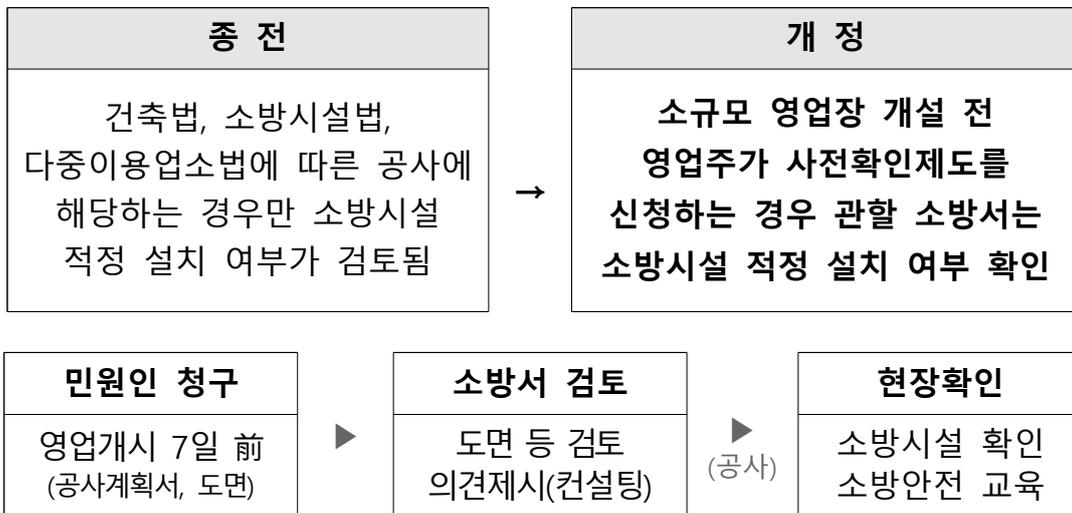
경상남도 | 예방안전과(☎055-211-5424)

소규모 영업장 개설 시 부적합한 소방시설 임의공사 예방을 위해 영업주 자율신청을 통한 소방시설 사전확인제도를 시행합니다.

시행이유

- 리모델링 건축시장이 활성화 추세이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시공하고 사후적발되는 사례가 많아, 영업장 개설 시 영업주 자율적인 신청을 통해 소방시설을 적합하게 설치하여 불이익을 예방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행일

2023년 3월 1일 예정

참고 | 「소방시설법」제4조(관계인의 의무)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6. 농림 · 축산 · 수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7)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14)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작업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어, 보다 많은 농업인과 농작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확대를 통해 현장에서 일하는 많은 농가들이 보험가입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완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산업재해보상보험에가입된 겸업농가 가입제한	가입가능

기존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된 자의 경우 지원제외 되었으나 22.10월부터 농업에 종사하는 겸업농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농업인안전 재해보험 가입가능

시행일

2022년 10월 1일

참고

농어업인의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

농림축산식품부 | 공익직불정책과(☎044-201-1777)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240)

기본형 공익직불제 농지요건을 완화*하여 최대 약 69천 명의 농업인이 새롭게 직불금 수령 가능합니다.

*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요건 삭제

추진배경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 실경작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 농지 요건 완화(사각지대 해소)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17 ~ '19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삭제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1.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3. 2003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시행일

2023년 4월 19일

참고 |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제8조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확대

| 경상남도 | 농업정책과(☎055-211-6234)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대상 연령이 확대되고,
1인당 지원금액이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추진배경

- 문화적 혜택이 부족한 농촌지역 여성농업인의 문화향유 기회 제공

주요내용

구 분	종 전	개 정
지원연령	만 20세 이상~만 70세 미만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
지원금액	1인당 연 13만원	1인당 연 20만원

- ▶ 지원대상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
만 20세 이상~만 75세 미만(1948.01.01.~2003.12.31.)
- ▶ 지원금액 : 1인당 연 20만원 (자부담 4만원 포함)
-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 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경남바로서비스* 신청
* 경상남도 누리집(www.gyeongnam.go.kr/baro)

시행일

2023년 2월

참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제10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지원 확대

|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24)

축산농가 경영 부담경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보조금, 지원축종을 확대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지속 가능한 축산을 위해 환경(악취), 질병, 생산성 확대에 정교한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필요
- 사료 등 원자재의 가격 상승에 따라 축산농가 경영 부담경감 등 기여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사업비 재원비율 국고 30%, 용자 50%, 자담 20%	① 사업비 재원비율 국고 30%, 지방비 10%, 용자 40%, 자담 20%
②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 양봉	② 지원축종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곤충 (갈색거저리유충, 흰점박이꽃무지 유충, 누에), 양봉, <u>말(추가)</u>

- 사업량 : 60개소
- 사업비 : 7,000백만원(국고 2,100, 지방비 700, 용자 2,800, 자담 1,400)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유기유실동물 입양장려 신규 지원

|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유기동물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입양장려금 및
펫보험을 신규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유기유실동물의 새주인 찾아주기 등 인도적 입양활성화 유도

주요내용

- (사 업 량) 3,500마리(입양장려금 2,240, 펫보험 1,260)
- (사 업 비) 350백만원(도비 70, 시군비 280)
- (지원대상)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 * 동물등록(내장형) 필수
- (지원내용) 입양장려금(마리당 10만원) 및 펫보험(마리당 연 10만원) 지원
- (신청기간) 2023. 1월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참고 |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

| 경상남도 | 축산과(☎055-211-6543)

동물의 보호와 관리, 학대 방지 등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동물보호법」이 2023년 4월 27일부터 전면 개정됩니다.

추진배경

- 동물학대행위 범위확대 및 재발방지 제도 마련, 소유자 등의 관리 의무 강화 등 대규모 제도개선 사항 반영

주요내용

- 소유자의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동물학대행위에 추가
 -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 유기유실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관련시설 및 운영기준 준수
- 반려동물 관련 영업체제 개편 및 무허가·무등록 영업 처벌강화
 - * (허가) 동물생산업·수입업·판매업·장묘업, (등록) 동물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운송업
 -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무허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등록)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행일

2023년 4월 27일

| 참고 | 동물보호법

산란계농장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농림축산식품부 |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044-201-2559)
경상남도 | 동물방역과(☎055-211-6574)

2023년부터 산란계농장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산란계 농장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 의무대상 확대 시행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산란계 10만수 이상 (2022.1.1. 시행)	산란계 5만수 이상 (2023.1.1. 시행)

- 일정규모 이상의 산란계 농장은 닭 진드기 등 해충 방제 활동의 효율화 및 전문화를 갖춘 가축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해 매년 1회 이상 소독 및 방제 실시 의무사항 규정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 동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수산공익직불제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044-200-5454)
경상남도	해양항만과(☎055-211-3914) 수산자원과(☎055-211-4054)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경영 지원을 위해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어가, 어선원)을 신규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농업·임업 분야와의 형평성 제고와 어촌소멸 방지 및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 (기존)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 (추가)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주요내용

구분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금	어선원 직접지불금
① 지급대상	어업형태별 일정 경영 규모* 미만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 * (어선어업) 총톤수 5톤 미만의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양식어업) 연간 양식수산물 판매액이 해수부장관이 고시하는 판매액 미만인 어업인 (신고어업) 면허·허가어업을 겸하지 않는 단일 신고어업인	연근해어선 등 소유자*와 1년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 유지 또는 6개월 이상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 * 근해어업, 연안어업, 구획어업, 내수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
② 지급금액	년간 120만원	
③ 어업 외의 종합소득	개인 2천만, 가구 합계 4천5백만 미만	
④ 준수사항 이행	공익교육 이수, 안전한 수산물 생산, 해양환경 보전, 어촌공동체 활동 등	
⑤ 어업 종사기간	3년 이상	1년 중 6개월 이상
⑥ 어촌 거주기간	3년 이상(신고어업인, 내수면어업인)	-
⑦ 제외대상	어가 내 어선톤수 합 일정 수준 이상, 어업총수입 일정 금액 이상	-

시행일

2023년 4월 1일(예정)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 확대

|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14)

여성어업인 바우처 지원금액이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여성어업인 문화활동 기회 제공으로 어업경영 의욕 고취 및 어촌 삶의 질 향상 도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13만원(자부담 2.6만원) 지원	20만원(자부담 4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만20세 이상 ~ 75세 미만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도내 여성어업인
- ※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시·군청 담당 부서 방문 신청 또는 보조금24 인터넷 신청
- ※ 지원방법 : 여성어업인 바우처카드(수협) 지급

시행일

2023년 1월 1일 / 사업신청은 시·군별 접수시기 상이함

| 참고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1조

어구 생산업 및 판매업 신고제 시행

해양수산부 | 어업기자재관리과(☎044-200-5605)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14)

2023년도부터 어구의 생산, 판매 등 국내에서 유통되는 어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생산업·판매업 신고제를 도입합니다.

추진배경

- 해상기인 쓰레기 중 폐어구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어구의 생산·판매·유통 등에 관한 실태 파악과 관리체계 강화 필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불필요	어구를 생산·판매하는 자는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 의무화

※ 신고대상자 : 신고 대상 어구나 어구자재*를 생산 및 판매(수입 포함)하는 자는 시장·군수에 신고 의무화

* 대상어구 : 어구 28개(정치망, 저인망, 트롤, 선망, 채낚기, 자망, 안강망, 봉수망, 들망, 장어통발, 문어단지, 통발, 연승, 형망, 권현망, 조망, 선인망, 낚시, 정치성구획 등), 어구자재 9개(그물, 로프, 뜸, 발돌, 추, 통발, 단지, 낚시줄, 낚시바늘) 품목

※ 필요서류 : 신고서, 개인(주민등록증), 법인(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비 고 : 어구 생산·판매업자는 생산·판매한 어구의 종류·구매자·수량 등을 기록하고 3년간 보존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참고 | 「수산업법」 제71조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 지원

해양수산부 | 양식산업과(☎044-200-5634)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4)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2.7.21.)에 맞춰
굴 껍데기 자원화 전처리 시설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수산부산물 다량 배출자(어업인 등)에 대한 분리배출 의무 이행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지원 필요
 -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의 위생 및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에 기여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굴 껍데기 분리배출 의무자
- 지원내용 : 굴 껍데기 유기물과 코팅사 등 제거 위한 전처리 시설 지원
 - ① (해상세척장비) 굴 채취 해상작업대에서 1차 유기물 제거
 - ② (코팅사 분리기) 굴까기 작업장에서 코팅사 분리
 - ③ (악취 저감시설) 미생물을 이용하여 굴 껍데기 냄새 저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청년 어업인 귀어 인턴제 지원사업 실시

| 경상남도 | 수산안전기술원 ☎055-254-3523

영어취업 희망 청년층을 대상으로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에 인턴(실무연수)으로 근무 시 6개월간 월 보수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를 위하여 청년 귀어인에게 인턴기회를 제공, 어촌정착 동기 부여 및 안정적 귀어정착을 유도
- 소멸위기에 놓인 어촌에 청년 신규인력 유입을 유도하여 어업부문 일손 부족 해소 및 어촌 활성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 청년 귀어인 15명
 - 인턴 : 만 18세 ~ 만 45세 미만 미취업자 및 귀어희망인
 - 채용대상자 : 시·군이 추천하는 일정 조건을 갖춘 어업법인, 선도어가 등 우수 전문어업경영체
- (지원내용) 인턴을 채용한 생산자단체, 선도어가 등에 자금 지원
 - 인턴 1인당 월 100만원, 월 보수의 50%, 연 600만원 한도
- (추진계획)
 - (2월) 사업계획 확정 → (3월) 우수 전문어업경영체 및 청년귀어인 모집 → (4~12월) 사업시행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5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0조
「경상남도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제5조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확대 시행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044-200-5663)
경상남도 |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23)

청년 어촌정착 지원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주요내용

- (지원대상)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 청년 어업인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순위
대상자	전년도 사업대상자	귀어인	후계어업 경영인	현지거주 어업인	어업 양식업 창업예정자	수산물 유통·가공업 사업자

- (지원내용) 어업창업 3년 이하, 만 40세 미만의 청년어업인(창업예정자)에 대한 수산업 경영비 및 어가 가계자금 지원

종 전				개 정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월	100만원	90만원	80만원	→	월	110만원	100만원	90만원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3조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 운영

| 경상남도 | 해양항만과(☎055-211-3943)

도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과 실천태도 증진으로 해양오염 저감을 위해 해양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합니다.

추진배경

- 수산업·해양관광·레저 등 해양활동 증가에 따른 해양오염 가능성 증대로, 이용자의 해양환경 보전 및 오염 예방에 대한 인식 강화
- 해양환경 교육을 전담할 도내 전문 교육기관 필요

※ 민선8기 도정과제 채택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년 ~
- 사업량 : 2개소(권역별 1개소)
 - * '23년 동부권역(통영) 1개소, '25년까지 서부권역(사천·고성·남해·하동) 1개소 추가 운영
- 사업내용 : 해양환경교육센터 지정 · 운영
 - 도내 해양환경교육 관련 기관(비영리법인·민간단체 등) 활용 교육센터 지정
 - 해역이용자(어업인·연안주민 등), 청소년 대상 해양환경 교육프로그램 운영
- 총사업비 : 900백만원(도비 50%, 시군비 50%)
 - * 개소당 연간 운영비 150백만원

시행일

2023년

| 참고 |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 조성

|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23)

정부의 배합사료 확대 정책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산양식용 친환경 배합사료 클러스터를 하동군 대송산단에 조성합니다.

추진배경

- 고효율·고품질 배합사료 개발 및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어업인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

주요내용

- 친환경 수산양식 배합사료 공장 건립(33,000㎡)
 - 사업기간 : 2022년 ~ 2024년
 - 사업비 : 25,080백만원
 - 기대효과 : 어업인 신선한 배합사료 공급
- 국립 수산양식 사료연구소 설치(8,000㎡)
 - 사업기간 : 2023년 ~ 2025년
 - 사업비 : 12,600백만원
 - 기대효과 : 고효율·고품질 수산양식 배합사료 기술개발

시행일

2023년 1월

| 참고 | 「양식산업발전법」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시행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32)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055-211-4055)

「총허용어획량(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금어기·금지체장을 다르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추진배경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어업인의 TAC 참여를 촉진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자발적으로 수용하는 경우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 추진

주요내용

- TAC 기반 규제완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어업인 단체가 어종별 연간 어획량 최고한도를 준수하는 등의 자원관리사항을 이행하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금어기·금지체장 달리 적용

※ 필수조건 : ①전체 어획량 TAC 관리, ②위성기반 어선위치발신장치 (INMARSAT) 장착, ③전자어획보고시스템 적용 / (선택조건)
①CCTV 설치, ②수산자원보호조치 강구

시행일

2023년 1월 12일

참고 | 「수산업법」 제86조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 문화 · 관광 · 환경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정책과(☎044-203-2519)
경상남도 | 문화예술과(☎055-211-4544)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2022년 10만원에서 2023년은 10% 상승된 11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추진배경

-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주요내용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확대

증 전		개 정
· 1인당 연간 10만원	→	· 1인당 연간 11만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지원대상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일인당 연 11만원
- 사 용 처 : 문화(도서, 음악, 영화, 공연 등), 체육(스포츠관람), 여행 등

시행일

2022년 9월

참고 |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3, 제15조의4

예술활동증명 장르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예술인지원팀(☎044-203-2718)
문화예술과(☎055-211-4545)

예술활동증명 대상으로 '스트리트 댄스', '방송댄스', '뮤직비디오', '웹툰', '웹소설', '소리책(오디오북)', '그림책'이 추가됩니다.

추진배경

- 최근 한류의 주요장르이거나 비대면 온라인 활동 증가로 급성장하고 있는 분야, 예술활동증명 신청이 많은 분야의 장르를 추가하여 체계적인 예술복지 지원 기반 마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분야	장르	분야	장르
문학	시, 시조, 소설(동화, 청소년), 희곡, 수필, 평론, 평전 등	문학	웹소설, 오디오북, 그림책 추가
무용	한국무용(전통, 창작), 발레(전통, 창작), 현대무용, 실용무용	무용	스트리트댄스, 방송댄스 추가
연예	드라마, 예능·교양프로그램, 패션쇼, 광고, 만담, 마술, 곡예	연예	뮤직비디오 추가
만화	캐리커처, 카툰, 스토리만화	만화	웹툰 추가

※ 사업개요

-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지원을 통해 창작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예술인 복지법」의 복지지원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로,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융자 등의 각종 예술인 복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행일

2022년 12월 9일

※ 참고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044-203-3187)
경상남도 | 체육지원과(☎055-211-4715)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이 월 9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추진배경

-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지원대상 · 만19~64세 일반 장애인 · 만12~18세 유소년은 일반 스포츠강좌이용권으로 지원	① 변동없음
② 지원금액 : 월 8만 5천원	② 월 9만 5천원
③ 지원기간 : 최대 10개월	③ 최대 12개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만19~64세 장애인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9만 5천원 최대 12개월 지원
- 사용방법 :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d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남도

체육진흥과(☎044-203-3137)
체육지원과(☎055-211-4724)

이용권 1인당 지원액이 월 9만 5천원으로 인상되고, 지원기간이 12개월로 늘어납니다.

추진배경

-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건강 증진 도모 및 삶의 질 향상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① 지원금액 : 월 8만 5천원	① 월 9만 5천원
② 지원기간 : 연간 10개월 이상	② 연간 12개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월 ~ 12월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의 만5~18세 유·청소년
- 사업내용 : 스포츠 수강료 1인당 월 9만 5천원 연간 12개월 지원
- 사용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리집(<https://svoucher.kspo.or.kr>)을 통한 이용권 신청 및 스포츠 강좌 선택·결제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경남관광기념품 온라인 입점 확대

| 경상남도 | 관광진흥과(☎055-211-4614)

경남관광기념품점 상품의 온라인(네이버스마트스토어, 쿠팡) 입점이 확대됩니다.

추진배경

- 경남도내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을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입점도 확대하여 전국 어디서나 도내 관광기념품 구매 가능

주요내용

증 전		→	개 정	
판매채널	품목수(개)		판매채널	품목수(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323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400	
쿠팡	260	쿠팡	300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362, 창원컨벤션센터 1층
- 사업목적 : 시군특산물, 공예품 등 관광기념품을 전시·판매하여
소상공인 판로확보 및 관광이미지 제고
- 문 의 처 : ☎055-212-1340

시행일

2023년 1월 1일

경남관광기업 지역인재 채용 지원 확대

| 경상남도 | 관광진흥과(☎055-211-4614)

도내 관광기업의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인건비 지원 규모가 확대됩니다.(23개 기업 → 30개 기업)

추진배경

- 경남 관광기업의 구인난 해소,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지역인재 채용 촉진 도모

주요내용

증 전	개 정
① 지원대상 - 경남 소재 관광기업 ② 지원기간 : 2022. 5~10월 ③ 지원규모 : 23개사 ④ 지원금액 : 총 200백만원	→ ① 변동없음 ② 지원기간 : 2023. 5~10월 ③ 지원규모 : 30개사 ④ 지원금액 : 총 230백만원

※ 사업개요

- 위 치 : 창원시 성산구 충훈로 91, 창원문성대학교 경상관 1층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 사업목적 : 경남 관광기업의 인건비 부담 경감 및 지역 내 인재 채용 활성화
- 문 의 처 : ☎055-277-8412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산림휴양시설 도민 우선예약제 시행

경상남도 | 산림휴양과(☎055-211-6863)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055-254-3972)

도립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도민의 산림휴양시설 이용기회를 확대하고 예약취소 위약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추진배경

- 도립 자연휴양림을 대상으로 도민 이용기회 확대에 따른 도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공공시설 사용 위약금 부담 경감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 신 설 > < 신 설 > 전액 반환 기준을 사용예정일 10일 전	숙박시설의 50% 범위에서 경남도민 우선 예약 매매.교환 등 금지 단, 직계 존.비속 등은 가능 전액 반환 기준을 사용예정일 5일 전

시행일

2023년 2월(예정) * 조례 개정 중

참고 | 경상남도 금원산 자연휴양림 및 생태수목원 관리운영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환경부 | 국토환경정책과(☎044-201-7275)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완화하여 기반시설의 조속한 설치로 국민편익을 증진시킵니다.

추진배경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완화 관련 규제개선과제 및 건의사업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23. 상) 추진 중이며,
- 국민편익 등 선제적 조정을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으로 제도 시행

주요내용

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사업 확대

구 분	종 전	개 정
제외대상	도로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 및 하수관로 * 전기시설, 가스관, 상수도관, 기타배관(위험물 등), 통신시설	농어촌도로 지하 매설물* 및 재이용 공급관로(하/폐수처리수·온배수) 추가 * 공동구,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 재이용 공급관로는 도로법상 도로의 경우도 포함

②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기준면적 완화

구 분	종 전	개 정
자연휴양림	실질 개발면적	실질 개발면적
산림욕장		
치유의숲		
숲속야영장	전체 사업부지 면적	
산림레포츠시설		

시행일

2022년 9월 14일

참고

1.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비고 4 및 비고 10
2.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1746(2022.9.14.)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완화 시행)

가스열펌프(GHP) 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 지원

환경부 | 대기관리과(☎044-201-6908)
경상남도 | 기후대기과(☎055-211-6673)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합니다.

추진배경

- 하절기 전력피크 완화대책으로 보급 지원중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에서 다량의 오염물질 배출 지적*(언론, 국회)
- * 가스냉난방기에서 질소산화물(NOx)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 학교에 주로 보급되어 어린이 건강 위협 보도('20.10.9, SBS), 국정감사 지적('20.10.23)
- ⇒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GHP 환경기준 마련 및 부착사업 실시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3 ~ 2024년(2년간)
- 사업대상 : 가스열펌프가 설치된 건물(공공시설 지원제외, 교육시설 교육청 지원)
- 사업량 : 232대(창원99, 진주59, 통영4, 사천16, 김해15, 거제9, 양산24, 거창6)
- 사업비 : 812백만원(보조금 90%, 자부담 10%)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냉난방기?

- 전기모터 대신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확대 시행

환경부 | 교통환경과(☎044-201-6931)
경상남도 | 기후대기과(☎055-211-668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추진배경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확대 지원으로 대기오염물질 저감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4·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하나!
2023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

5등급
2005년 12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경유차 등급 구분
(하이브리드 포함)

4등급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배출가스 기준 적용 경유차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에서 차량번호로 꼭 확인하세요!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참고 | 「대기환경보전법」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제도 도입

산림청
경상남도

산림복지정책과(☎042-481-4245)
산림휴양과(☎055-211-6863)

임업경영 뿐만 아니라 산림휴양·체험·관광·숙박 등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 및 임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추진배경

- 임업 경영에 이용되는 산림 안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산림문화·휴양 서비스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을 조성하여 임가소득 향상 도모

주요내용

- (신청요건) 임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
 - * 임업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림업 또는 임산물생산업
- (승인권자) 시장·군수
- (지목변경) 숲경영체험림에 포함된 산지는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없음
- (시행령, 시행규칙) 준비 중

시행일

2023년 6월 11일

참고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신설

산림청
경상남도

산림일자리창업팀(☎042-481-1852)
산림관리과(☎055-211-6822)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추진배경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을 규정하여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 비용 산출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적용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적용

※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은 기존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산림사업에 적용되는 부분을 명시하였으며, 산림사업 설계·감리용역 등의 비용 산출시 필요한 대가 기준의 범위를 정함.

※ 적용대상 : 조림사업, 숲가꾸기사업,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등

시행일

2023년 1월

참고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 등)